

改正된 商標審査基準(1)

3月 14日 正과 함께 施行

特許廳은 지난 3月 14日 현행 商標審査基準을 일부 改正했다. 현행 商標審査基準은 지난 83年 11月 14日字 改正된 것이었다.

特許廳에 따르면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은 따로이 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改正日인 3月 14일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 施行前, 즉 3月 14日 以前에 한 商標登錄出願은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從前의 基準에 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 全文을 3회에 나눠 실는다. <編輯者 註>

商標審査基準

制定 1981. 8. 31 特許廳例規 第81—2號
(以前은 內部指針으로 運營)
改正 1983. 11. 4 特許廳例規 第83—4號
改正 1988. 3. 14 特許廳例規 第88—1號

1. 法 第2條 第1項의 特別顯著性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商標라 함은 商品을 業으로써 生産·製造·加工·證明 또는 販賣하는 者가 自己의 商品을 他業者의 商品과 識別시키기 위하여 使用하는 記號·文字·圖形 또는 이들의 結合(이하 “標章”이라 한다)으로서 特別顯著한 것을 말한다.

『特別顯著性이란 商標의 構成이 明瞭하고 一般 世人의 注意를 끌 수 있는 정도로서 去來上의 自他商品 識別力을 말한다.』

2. 法 第8條의 商標登錄 要件

第8條 (商標登錄의 要件) ①商標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登錄을 받을 수 있다.

1. 그 商品의 普通名稱을 普通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2. 그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
3. 그 商品의 產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價格·生産方法·加工方法·使用方法 또는 時期를 普通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4. 顯著한 地理的 名稱, 그 略語 또는 地圖만으로 된 商標

5. 흔히 있는 姓 또는 名稱을 普通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6. 簡單하고 흔히 있는 標章만으로 된 商標

7. 第1號 내지 第6號外에 自己의 商品과 他人의 商品을 識別할 수 없는 商標

『(1) 特別顯著性이 없는 標章과 特別顯著性이 있는 標章이 結合하여 構成된 商標는 原則의 으로 識別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第8條 第1項 各號의 判定時期는 査定時로 한다.』

가. 第1項 第1號

그 商品의 普通 名稱을 普通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商品의 普通 名稱에는 그 商品의 略稱·俗稱, 其他 該當商品을 취급하는 業界에서 그 商品을 指稱하는 것으로 使用하고 있는 名稱을 普通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것도 包含한다.』

나. 第1項 第2號

그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

『(1) 慣用標章이라 함은 어떤 商標 및 그 商品에 있어 需要者나 同業者들간에 多年間 多數人이 사용한 결과 自他商品의 識別力을 상실한 標章을 말하며, 이를 標章의 일부분으로 同상 사용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例) : ① 청주—정종

② 직물—“TEX” “LON” “RAN” 등

(2) 慣用하는 標章에 대하여는 특수한 형태로 表現한 경우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 第1項 第3號

그 商品의 產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價格·生産方法·加工方法·使用方法 또는 時期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1) 商品의 產地表示라 함은 어느 商品의 主產地를 表示하는 것으로서 當該商品이 當該地方에서 과거에 生産되었거나 現實적으로 生産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① 모시—한산

② 사과—대구

(2) 商品의 品質表示는 당해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商品의 品質을 直接적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大·中·小·上·中·下·甲·乙·丙·丁·優·良·可·金牌·銀牌·Net·特級·特選·特別·名物·元祖·優秀·Super·DeLuxe·NEW·STANDARD·GENUINE·COMPLETE 등과 같은 商品의 品位, 品質 등을 表示하는 文字나 記號 및 圖形

(3) 商品의 原材料 表示는 당해 指定商品에 現實적으로 使用되고 있거나 使用될 수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① 두 부—콩

② 창문틀—알미늄

(4) 商品의 效能表示는 당해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直接的인 效能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① 화장품—보들보들

② 복사기—Quick Copy

③ 약 품—잘나

(5) 商品의 用途表示는 당해 指定商品의 用途를 直接적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① 비료—원예

② 가방—학생

(6) 商品의 數量表示는 去來社會에서 使用되고 있는 數量의 單位·記號 등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2작, 100g

(7) 商品의 形狀表示는 商品의 外形·模樣(무늬 包含) 및 規格 등을 당해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直接적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4자표, 10문, 265mm

(8) 商品의 價格表示는 去來社會에서 現實적으로 流通하고 있는 價格과 價格表示로 認識되는 單位 및 그 單位의 記號 등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100원, 10Dollar, 5\$, 백원

(9) 商品의 生産方法·加工方法 및 使用方法의 表示는 該當 指定商品의 生産方法·加工方法 및 使用方法을 直接적으로 表示하는 경우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① 책상—조립

② 신발—수제(手製)

③ 시제—정밀가공

(10) 商品의 時期表示는 季節·時間·時間 등을 당해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直接的이고 現實적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① 의류—춘·추·여름·겨울

② 약품—식전·식후

(11) 通商書籍의 題號로 쓰인다고 認定되는 것

(例) : ○○서·○○학·○○선·○○집·○○저 등은 原則적으로 本號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新聞·雜誌 등의 定期刊行物의 題號는 原則적으로 識別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12) 商標가 本號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同時에 商品을 誤認·混同하게 할 憂慮가 있거나 또는 需要者를 기만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法 第9條 第1項 第10號 및 第11號도 아울러 適用한다.

(13) 文字와 文字가 結合된 商標의 경우 各部分을 分離하여 解釋하는 경우에는 이 規定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2個의 文字가 結合하여 새로운 觀念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例) : Miss : 用途表示, COTTON의 指定商品이 織維製品인 경우 品質·原材料 表示에 해당되거나 結合(Miss COTTON)하여 새로운 觀念인 “목화아가씨”인 경우 同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함.』

라. 第1項 第4號

顯著한 地理의 名稱, 그 略語 또는 地圖만으로 된 商標

『(1) 國家名, 國內의 市·道名과 特別市·直轄市의 區分, 外國의 首都名과 顯著하게 알려진 大都市名, 그리고 國內外에 顯著하게 알려진 古蹟地名·觀光地名·繁華街名 기타 著名한 行政區域名 및 이들의 略語 또는 보통 形態로 된 地圖 등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定되는 때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2) 繁華한 商店街名(外國의 繁華街 包含)은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出處의 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法 第9條 第1項 第11號도 아울러 適用한다.

(3) 顯著한 地理의 名稱과 特別顯著性이 없는 部分을 結合한 標章인 때에도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特別顯著性이 있는 部分과 地理의 名稱이 부기적으로 結合된 標章은 表記된 地理의 名稱이 產地 表示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出願인과 당해 地理의 名稱과의 關係에서 消費者의 誤認 또는 欺瞞의 憂慮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위 (2), (3)의 경우일지라도 協會·組合·研究所 등 公益機關과 法人格을 가진 會社名 및 登記된 個人의 商號와 이들의 略稱은 이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마. 第1項 第5號

흔히 있는 姓 또는 名稱을 보통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흔한 姓과 名稱을 보통으로 쓰이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

(1) “흔한”이란 貴하지 않고 現實적으로 多數 存在하거나 觀念上으로 多數 存在하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例) : 電話簿에서 相當數를 發見할 수 있을 때

(2) 名稱이란 法人의 名稱, 登記된 個人의 商號, 著名한 商店名 및 이들의 著名한 略稱을 包含한다.

(3) 特別顯著性이 없는 것

① 흔한 姓을 한글이나 漢字 또는 알파벳 또는 이들을 併記하여 表記한 것

② 흔한 “성”과 “상사”·“공업사”·“상회”·“사”·“회”·“당”·“조합”·“협회”·“연구소” 등의 文字(外國文字로 表記하거나 外國文字를 翻譯한 때도 包含한다)를 結合한 것. 다만, 흔한 姓과 法人格을 가진 會社名 및 登記된 個人의 商號가 結合된 標章은 特別顯

著性이 있는 것으로 본다.

(但書 例) : 리 주식회사(LEE Co.)

③ 公共機關·公共團體·一般會社團體 또는 會社 등에서 職名으로 통상 使用하는 總長·社長·理事長·PRESIDENT 등으로 표시한 것

(4) 特別顯著性이 있는 것

① 姓名은 原則적으로 特別顯著性이 있다.

② 商標를 構成하는 文字가 姓 또는 다른 觀念을 아울러 남겨할 때에 文字나 圖形 등의 結合에 의하여 姓 以外의 觀念이 顯著하게 일어나므로써 指定商品과 關聯이 없을 경우에는 特別 顯著性이 있는 것으로 본다.

(例) : “馬”라는 姓과 다른 事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 圓形을 結合한 標章』

바. 第1項 第6號

簡單하고 흔히 있는 標章만으로 된 商標

『(1) 文字인 경우

(가) 한글의 1字 또는 外國文字

① 特別顯著性이 없는 것

(例) : ㉔ 한글의 1字(“취”를 “ㄸ”와 같이 풀어 쓴 것도 1字로 取扱한다.

㉕ 外國文字 1字 또는 2字로 表示하거나 이에 그 發音을 한글이나 外國文字로 結合 表示한 것

㉖ 外國文字 또는 한글로 表示한 것으로서 化學品, 金屬機械 등에서 使用되고 있는 專門記號로서 이를 外國文字 또는 한글 및 外國文字와 한글을 結合하여 表示한 것

㉗ 外國文字 1字 또는 2字에 “Co”·“Ltd” 등을 結合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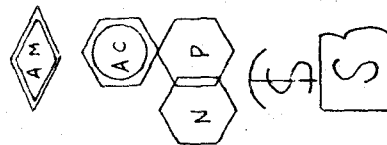
㉘ 去來社會에서 事物의 觀念을 直感할 수 없는 漢字의 1字

② 特別顯著性이 있는 것

(例) : ㉙ 漢字의 2字

㉚ 外國文字 3字以上

㉛ 外國文字의 2字에 識別力 있는 記號 또는 圖形을 結合하여 表示하거나 모노그램(合一文字)으로 表示한 것



㉜ “담”·“별” 등과 같이 한글의 1字로서 事物의 觀念을 直感할 수 있는 것

(2) 숫자의 경우

(가) 特別顯著성이 없는 것

(例) : ① “88·五五·參拾參” 등 99 이하의 숫자로 表示한 것.

② 위 第①項의 숫자를 한글로 併行 表示한 것.

③ 外國語의 숫자를 한글로 表示하거나 外國文字로 表示한 것. (“원”·“투”·“쓰리”·“나인티나인”·“ONE”·“TWO”·“THREE”·“NINETY-NINE”)

④ “원투” 또는 “ONE TWO”와 같이 2개의 數字를 結合하여 表示한 것.

⑤ 첫째·第2·Second·Ⅶ 등 順位의 文字로 表示한 것.

(나) 特別顯著성이 있는 것

(例) : ① 777, 888 등과 같은 100 이상의 숫자로 表示한 것. 다만, 具體的인 事項의 必要에 따라 指定商品등의 關係를 考慮하여 判斷한다. (“123”·“345” 등 連續的인 숫자는 除外)

② “원 화이브 쓰리”·“화이브 원 화이브”·“ONE FIVE THREE”·“FIVE ONE THREE”와 같이 3개 이상의 숫자를 結合하여 表示한 것.

(3) 其他

輪廓등으로 흔히 使用되는 ○·△·□·◇·◆·#·+·-·& 또는 이들을 單純하게 重複包含(例 : ◎·回等)한 것, 月桂樹무늬·근무늬·꽃무늬 또는 鳳凰새무늬 등의 標章은 特別顯著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위 제(3)항의 圓形 또는 무늬와 다음의 文字를 結合한 商標(그 文字가 輪廓에 接觸表示된 여부에는 관계없이 取扱한다)는 特別顯著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한글의 1자(다만, 뚜렷한 事物의 觀念을 낳고 이를 直感할 수 있는 것은 除外)

② 알파벳의 1字 또는 2字와 이에 그 字음을 한글로 結合하여 表記한 것.

③ 化學品·金屬機械 등에서 使用되고 있는 專門記號로서 이를 알파벳·한글 또는 알파벳과 한글로 結合하여 表記한 것.

④ 알파벳의 1字 또는 2字에 “Co”·“Ltd” 등을 結合한 것.

⑤ 「갑·을·병·정」, 「대·중·소」, 「상·하」, 「우·량·가」, 「우·수」 등과 같이 商品의 記號 또는 等級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識되는 文字로 된 것.

(5) “A아”·“12A”·“V-8”·“SV8”·“3M”·“M45”·“B” 등과 같이 特別顯著성이 없는 商標 相映사십오 Beta

互間的 結合은 特別顯著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結合에 의하여 特別顯著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例) :



사. 第1項 第7號

第1號 내지 第6號外에 自己의 商品과 他人의 商品을 識別할 수 없는 商標

『앞의 第1號 내지 第6號에 該當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自他商品의 識別力이 없는 것은 本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例) : ① 一般의으로 쓰이는 口號·標語·인사말이나 人稱代名詞 또는 流行語로 表示한 것.

② 단기·서기의 文字로 表示하거나 同年度와 混同할 憂慮가 있는 것.

③ 사람·天然物 또는 自然物을 寫眞으로 表示한 것.』

아. 法 第8條 第2項에 관한 것

第1項 第3號·第5號 또는 第6號에 該當하는 商標라도 出願前에 使用한 結果 需要者間에 그 商標가 누구의 商標인가를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것은 同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登錄을 받을 수 있다.

『(1) 使用에 의한 識別力을 가지는 商標의 登錄은 原則的으로 그 商標 및 그 商標를 使用하고 있던 商品에 한하여 認定하고 類似한 商標 및 商品에 대하여는 認定하지 아니한다.

(2) 使用에 의하여 識別力을 가지는 商標에 附記程度의 것을 單純히 붙인 商標의 登錄은 第12條에 規定한 聯合商標로서 認定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商標를 使用하여 識別力이 생겼다는 證據資料에 의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3) 使用에 의하여 識別力을 갖는 商標의 立證은 使用한 結果 需要者들이 그 商標 및 商品의 出處를 認識하고 있다고 認定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各 證明書에 添附하는 商標는 使用에 의하여 識別力을 갖는 商標와 그 要部가 같으므로 全體的으로 類似하여 그 商標 및 商品이 出處의 誤認을 일으키지 않을 程度이어야 한다.

(4) 使用에 의하여 널리 認識된 商標라 함은 實際 使用된 그대로의 商標이어야 하며, 그와 달리 變更된 類似한 商標는 使用에 의하여 自他商品의 識別力을 가지는 商標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同號의 規定에 依據 識別力이 認定된다 하더라도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品質의 誤認, 需要者 欺瞞의 憂慮가 있는 것은 第9條 第1項 第11號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5) 商標의 使用에 의하여 識別力이 있다고 主張하

는者に 대하여는 다음 事項을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게 한다.

(가) 使用한 商標

(나) 繼續 3年以上 使用한 事實

(다) 特別市·直轄市·道廳所在地 또는 全國에 걸쳐 使用한 事實

(라) 指定商品의 生産·製造·加工·證明 또는 販賣 量 등

(마) 使用의 方法·回數 및 內容 等

(6) 證據方法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 등 을 定할 수 있다.

(가) 國·市·道 기타 公共團體의 證明書

(나) 商工會議所의 證明書

(다) 同業組合의 證明書

(라) 商品去來先 또는 代理店 등 充分히 立證할 수 있는 多數의 證明書(이 경우에 商品去來先 또는 代理店 等の 事業者登錄證을 添附할 것)

(마) 新聞·雜誌·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등에 宣傳 廣告 事實證明

(7) “需要者” 가운데 “去來者”도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

(8) 需要者들이 顯著하게 認識하고 있는 基準은 出願前 3年以上 使用한 結果 全國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와 特別市·直轄市·道廳所在地等 어느 한 地方에서 需要者들이 顯著하게 認識하고 있는 경우도 包含한다. 「顯著하게 認識하고 있는」地域의 範圍에 대하여는 指定商品과의 關係를 充分히 考慮하여야 한다.

(9) 外國人 商標에 대하여 本項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그 商標가 國內의 需要者(去來者 包含)에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경우는 收入·販賣·廣告等의 事實을 參考한다.』

3. 法 第9條의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商標는 第8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外國의 國旗 및 國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와 赤十字·올림픽 또는 著名한 國際機關의 稱號나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2. 國家·民族·公益團體·宗教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關係를 虛偽로 表示하거나 이를 誹謗 또는 侮辱하거나 惡評을 받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

3. 國家·地方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團

體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公益 事業으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表示하는 標章으로서 著名한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다만, 國家·地方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團體나 公益事業團體에서 그의 業務標章에 관한 登錄出願을 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4.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하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

5. 政府에서 開設하거나 政府의 認可를 받아 開設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에서 開設하거나 外國政府의 認可를 받아 개설하는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과 同一 類似한 標章이 있는 商標. 다만, 그 賞牌·賞狀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그 商標의 일부로서 標章을 使用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6.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 이들의 略稱을 包含하는 商標. 다만, 그 他人의 承諾을 얻은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7.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

8. 商標權이 消滅한 날로부터 또는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確定日로부터 1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他人의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 다만, 他人의 商標權이 登錄 失效日前 1年 以上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9. 他人의 商品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의 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

10.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業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

11. 商品의 品質을 誤認케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念慮가 있는 商標

『法 第9條 第1項 各號의 規定에 該當與否 判定時期는 法에서 따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査定時로 한다.』

가. 第1項 第1號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外國의 國旗 및 國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와 赤十字·올림픽 또는 著名한 國際機關의 稱號나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1) 商標의 일부에 國旗·國章 등과 同一 또는 類似한 圖形을 結合하였을 때에는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2) 「國旗·勳章 또는 褒章」은 現存하는 것에 한한다.

(3) 國際機關을 表示하는 稱號 및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은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4) 무궁화의 模樣으로 된 政府機關의 紋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은 이에 該當한 것으로 본다.』

나. 第1項 第2號

國家·民族·公益團體·宗教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關係를 虛僞로 表示하거나 이를 誹謗 또는 侮辱하거나 惡評을 받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

『(1) 公益團體의 範圍는 法人格을 가진 非營利的인 公益團體만을 認定한다.

(2) “虛僞로 表示하거나 이를 誹謗 또는 侮辱하거나 惡評을 받게 할 念慮”의 여부는 商標自體는 물론 去來 社會의 實情을 考慮하여 判斷한다.』

다. 第1項 第3號

國家·地方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團體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公益事業으로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表示하는 標章으로서 著名한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다만, 國家·地方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團體나 公益事業團에서 그의 業務標章에 관한 登錄出願을 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著名한 學校名, 宗教團體, 市·郡, YMCA, 보이스트 카우트 등을 表示하는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은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라. 第1項 第4號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하게 할 念慮

가 있는 商標

『(1) 公共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케 할 念慮가 있는 商標는 그 構成自體가 過激한 文字나 低俗한 圖形 등으로 된 경우 또는 商標의 構成自體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指定商品에 使用하므로써 社會 公共의 利益에 反하거나 社會의 倫理 및 道德觀念에 反하는 경우 및 需要者에게 嫌惡感을 주는 商標도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2) 他法律에 의하여 使用 등이 禁止되어 있는 標章이나 一般의으로 國際信義에 違背되는 標章도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

마. 第1項 第5號

政府에서 開設하거나 政府의 認可를 받아 開設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에서 開設하거나 外國政府의 認可를 받아 開設하는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標章이 있는 商標. 다만, 그 賞牌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그 商標의 一部로서 標章을 使用할 때는 例外로 한다.

『本號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商標가 品質保證의 機能을 가질 때에는 法第9條 第1項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商品의 品質誤認관계를 考慮하여야 한다.』

바. 第1項 第6號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 이들의 略稱을 包含하는 商標. 그 他人의 承諾을 얻은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著名한 他人이라 함은 著名한 個人과 法人을 말하며 名稱과 商號는 第3號의 公益團體에 包含되지 않는 모든 團體와 商號 또는 名稱 그리고 이들의 略稱도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본다(外國人 包含).』(계속)

(案) 本會 發明振興事業 (內)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 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어오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 無料展示 및 企業化 斡旋
- ◎ 優秀發明 試作品 製作 支援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
- ◎ 海外展示出品의 積極 支援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 推薦
- 創業資金 支援 推薦(45歲 未滿) ○ 企業化資金 投·融資 推薦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 企業과 發明家 結緣(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住所 및 電話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發明考案의 명칭을 적어 보낼 것.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